

#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

의안 번호	4391
----------	------

2025.12.5.  
산업건설위원회

## 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일·제출자: 2025. 11. 10.(월) 광양시장

나. 회부일: 2025. 11. 10.(월)

다. 상정일: 2025. 12. 4.(목)

-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“원안의결”

## 2. 제안 요지

가. 제안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등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를 위해 「광양시 도시계획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내용 반영
- 개발행위허가의 표고에 대한 규정 변경(안 제21조)
-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 명확화 및 단서 신설

### **3. 검토 결과**

- 본 조례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광양시의 도시계획 운영의 실효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
- 향후 건폐율 완화 등 실질적 영향이 큰 조항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환경·안전 영향 및 기반시설 수용력 등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### **4. 질의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**

### **5. 심사 결과: 원안의결(출석위원 7명)**

### **6. 기타 사항**

- 해당 없음.

붙임: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별송)